

결혼여성 성 선택자유 독일민법 위헌 판결로

【베를린=연합】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최근 “결혼한 부부가 ‘결혼 후 어떤 성을 사용할 것인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한 민법 1335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민법조항상 가부장적 우선권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남녀간의 생물학적 기능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대우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남녀간의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역할분담 역시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법 제1335조에 대한 위헌심사는 튀빙겐에서 치과 교정의료로 일하는 여성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직장 동료와 결혼한 이 여성은 결혼 후 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호적사무소를 찾았고 호적사무소는 법규정대로 남자의 성을 따 호적에 기록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이 여성은 “내가 여자라는 단 한가지

“남편 성 우선권 조항 남녀평등원칙 위배” 아이의 성도 합의못하면 ‘제비뽑기’ 결정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의 내 성을 잃게 됐다. 이런 불이익은 명백히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튀빙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유있다고 판단한 튀빙겐 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독일 민법 제1335조는 결혼한 부부가 합의에 따라 ‘남자의 성’ 또는 ‘여자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 ‘공동의 결혼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남성에게 우선권을 부여, 남성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과 함께 과도기적 규정을 제시했다.

즉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부의 경우 각자가 결혼 전에 사용하던 성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미합의 상태에

서 아이가 태어나면 역시 합의에 따라 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의 성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성을 한꺼번에 취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부모의 성을 한꺼번에 취할 경우 “그 순서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서 아이가 태어나면 역시 합의에 따라 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의 성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모의 성을 한꺼번에 취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부모의 성을 한꺼번에 취할 경우 “그 순서는 제비뽑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이다.